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기간 확대〉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8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기간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4조의6제3항).

Ⅲ. 검토의견

1.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기간 확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자가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재심청구 제기 기한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기한에 부합하도록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 ② ¹⁾ (생략)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 ----- <u>30일</u>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의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36조²⁾에서는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재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은 법 체계적인 통일성, 행정처분에 대한 사인(私人)의 권리 보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에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는데³⁾, 계약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인지 ‘지방공기업’ 인지 여부에 따라 재심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절차의 통일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이 확대(20일→30일)되는 것으로 전제로 개정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